##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46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이헌승·서범수·윤상현

박덕흠 • 조경태 • 정성국

박성민 · 신동욱 · 백종헌

김선교 • 박준태 • 김 건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 등 중개자와 판매자 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업계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티몬과 위메프와 같은 대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하면서 통신판매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할 재화등의 대금을 자의적으로 융통하여 사업상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따라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 보유와 관련하여 이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은행에 예치·신탁하고,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판매된 재화등의 대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환경을조성하고,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 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 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 판매중개자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 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 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⑨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6 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 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 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0조의4,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 등의 대금 등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 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4(재화등의 대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
	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
	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
	금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0일 이
	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
	한 지급기일까지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
	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
	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
	<u>하여야 한다.</u>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

<신 설>

- 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5(재화등의 대금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이하 "별
  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
  - ② 제1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 금을 별도관리하는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 용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 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 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 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

     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를 포함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⑧ 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제1한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⑨ 재화등의 대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 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 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 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의 관리 상 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 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 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생략)
   ②~④(생략)

,
1
<u>제20</u> 조의4, 제22조제1
<u> </u>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